의 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6년 12월 일

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홍 **전**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1996 11. 12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. 11. 18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상공자원부 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(안 제22조)
- 나. 부칙 제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엑스포기념재단의 시세감면 기간을 1년 연장 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대전EXPO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의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시세감면시 한이 9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EXPO기념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세 감면기간 을 1년간 연장해 주려는 것임.
- ㅇ 그동안 계속 제기 되었던 EXPO기채 800억원이 해소되었고 구세 감면 조례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('97. 12. 31) 측면과 기타 지역

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항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볼때 1년 간 연장해 줌으로써 대전의 상징인 과학공원으로서의 명소육성

과 관광 및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위해서는 바람직 한 조치로 판단됨.